【 2016.03.24(목) 강원도민일보 】

건설정책 중소건설사 불리

무용지물

종합심사낙찰제

시공 실적 문턱높아
대형 중견업체 유리
영세업체 보호 절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기술제안입찰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건설정책이 중소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종심제가 강원도를 비롯한 중소·영세 건설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종심제 기준안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50점△입찰금액 50점△사회적 책임가점(1점)△계약신뢰도(감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시공실적 15점△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배치기술자 10점이 적용되고 역량 항목으로는 △시공평가점수 15점△규모별 시공역량 3점△공동수급체 구성 2점 등이다.하지만 수행능력과 시공실적 부분에 배점이 높아 대형건설사와 중견업체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하는 기술제안입찰도 중소·영세 건설사에게 불리하다. 기술제안입찰은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13건에 불과하고 2012년 이후는 사실상 적용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제안입찰을 각종 공사에 본격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처에서 설계한 뒤 업체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강원도내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막대한 자금력으로 각종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외지 중·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성 공사 역시, 신 공법 등을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이 주 시행사로 선정됐다. 도내 업체들은 그나마 특별법에 적용,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뿐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사실상 영세한 건설업체들 보다는 중·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정책"이라며 "영세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2016.03.24(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 단독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Q Y건설과 Z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Y건설은 자금관리에만 관여하고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X는 Z건설로부터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Z건설은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이 경우 X건설은 Y건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공동수급체의 어느 한 구성원이 그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구성원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 계약을 체결한 구성원이 조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조합에 미치게 될 것이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114조). 즉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대리에서도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명시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으로부터 그 뜻을 알 수 있으면 되는 만큼, 조합대리에서도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모 조합의 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자 등으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한편 상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상법 제48조).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의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